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067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노성봉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20. 12. 10. 접수

제131935호로 마쳐진 2020. 12. 2.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임141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8. 11. 11.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30.부터 2020. 11. 29.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은 실제 임대차계약과 내용을 달리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¹⁾.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별지

1) 피고는 갑 제2호증은 C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 당시마다 무인으로 날인하였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과 갑 제2호증에 나타난 인영은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을 제7호증의 인영이 정부인으로 가려져 인영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 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12. 21.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